학교법인 청암학원

2022년 5회 법인이사회 회의록

구분	이사	감사
임원정수	8인	2인
재적임원	7인	2인
참석임원	6인	1인

1. 일　시 : 2022년 06월 24일(금) 15:00 ~ 16:35 (소집통보일 2022년 06월 16일)
2. 장　소 : 학교법인청암학원 이사회의실 및 온라인 접속
3. 임원 출·결 사항

° 참석 임원 : 이사 6인, 감사 1인

- 이사회장 (이사 4인, 감사 1인) : 이사장 오초녀, 이사 강병환, 배동호, 임종채, 감사 공태곤
- 온라인 (이사 2인) : 이사 강사범, 김도영

° 불참 임원 : 이사 1인, 감사 1인

- 이　사 (1인) : 유병용
- 감　사 (1인) : 양정훈

4. 상정안건

○ 의안 제1호 청암대학교 2022학년도 상반기 명예퇴직 제청 심의

○ 의안 제2호 청암대학교 2022년 9월 1일자 전임교원 재임용 제청 심의

○ 의안 제3호 법인 기본재산 운영 및 관리 방안 심의

○ 의안 제4호 법인 임원(이사) 해임 심의

○ 의안 제5호 법인 임원(이사) 선임 심의

○ 기타토의사항 및 업무보고

- 청암대학교 2022년 8월 31일자 정년퇴직 보고
- 청암대학교 명예교원 임용 보고
- 청암대학교 2022학년도 2학기 계약제 전임교원 신규채용 계획 보고
- 청암대학교 치위생과 교원 진정서 관련 보고
- 청암대학교 교육부 종합감사 지적사항 이행 관련 경과 보고

이사장 오초녀		이 사 강병환	강병환	이 사 배동호	배동호

- 차기이사회 일정 토의

5. 회의내용

사회자(류승현) 개회 전에 감사님께서 회의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자 요청이 있었음을 설명하다.

감 사(공태곤) 이사회가 의결기관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일부 이사님들이 한두번도 아니고, 외국에 있는 경우나 질환이 있는 경우는 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고려도 되어야 하고 상호 이해도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계속 이어지면 외부의 다른 사람들이 (회의 내용을) 알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영향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셔서 회의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하다.

의 장(오초녀) (김도영 이사에게) 감사님께서 원격이 아니라 직접 참석하셔서 회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셨다고 설명하다.

이 사(김도영) 다음부터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다.

의 장(오초녀) 강사범 이사도 이제는 코로나가 거의 끝나서 한국에 직접 와서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추가설명하다.

가. 국민의례

사회자(류승현) 국민의례를 진행하다.

나. 성원보고

사회자(류승현) 강사범 이사가 개인사정으로 이사회 예정 시간보다 조금 늦게 참석한다는 연락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현재 재적이사 7명 중 이사회장에 4명, 온라인으로 1명 참석하였고, 조금 후에 1명의 이사가 온라인으로 참석할 예정으로 의결에 필요한 성원이 되었다고 보고하다.

다. 개회선언 및 인사말

의 장(오초녀) 2022년 5회 법인이사회 개회를 선언하고, 사회자에게 2022년 4회 의결사항을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하다.

라. 지난 이사회 보고

사회자(류승현) 2022년 4회 법인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안 제1호 청암대학교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 변경 결산안 심의 건은 원안(등록금회계 13,655,180,982원, 비등록금회계 8,532,321,843원, 교비회계 총액 22,187,502,825원)대로 의결하였고, 의안 제2호 청암대학교 제7차 대학종합발전계획안(2023~2025) 심의 건은 원안대로 확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의안 제3호 청암대학교 재정운영계획안(2023~2025) 심의 건은 원안대로 확정하는 것으로 의결

이사장 오초녀	오초녀	이 사 강병환	강병환	이 사 배동호	배동호

하였고, 의안 제4호 청암대학교 2018년 3월 1일자 전임교원 재임용 제청 심의 건과 의안 제5호 청암대학교 2021년 3월 1일자 전임교원 재임용 제청 심의 건은 2020년 6회 법인이사회에서 의결하였던 XXXXXXXXXXXXXXXXXXXX-의 2020년 9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2년 6개월간의 한시적 임용을 취소하고 2018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재임용하고, 2021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3년간 재임용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하다.

마. 안건상정

1) 청암대학교 2022학년도 상반기 명예퇴직 제청 심의

의 장(오초녀) 의안 제1호 청암대학교 2022학년도 상반기 명예퇴직 제청 심의 건을 상정하고 기획처장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다.

기획처장(김성홍)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청암학원 정관 제47조2, 교직원 명예퇴직 및 수당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명예퇴직 신청 모집공고하였고, 징계사유를 확인하였으며, 이후 명퇴위원회의 및 인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2인을 제청하게 되었음을 보고하고, 제청자 중 1인이 의원면직 제한사유에 해당되어, 2021년 경찰서에 접수된 사항부터 취하된 내용까지 검토해서 전혀 무리가 없다고 사료되어 최종적으로 대상자로 제청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다.

<상반기 명예퇴직 제청 대상자>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재직기간	비고
1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5.3.1~22.8.31	
2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3.11.15~22.8.31	

이 사(강병환) 검찰청 회신자료를 보면 재수사 요청되어 있어 의원면직 제한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질의하다.

기획처장(김성홍) 대학에서도 우려가 되어서, 수사 중인 자는 명예퇴직 대상자에서 제외시킨다는 조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본 결과, 중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에 해당이 되면 명예퇴직금을 주더라도 다시 회수를 해야 하는데, 회수받지 못 할까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번 사건은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다가 지시 불이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한차례 각하된 내용이고, 중징계에 해당이 되지 않고 고소인이 취하를 하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어 제청하게 되었다고 답변하다.

의 장(오초녀) 이사들에게 질의 또는 의견개진을 요구하다.

이 사(강병환) 명예퇴직금 산출식에 대해 질의하다.

기획처장(김성홍)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며, 법정부담금을 포함하여 올해 6억 7천여 만원을 예산으로 확보하였으며, 명예퇴직하실 2명 이외에 정년퇴직 4

이사장 오초녀	오초녀	이 사 강병환	강병환	이 사 배동호	배동호

명의 퇴직수당까지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하다.

이 사(강병환) 퇴직수당을 학교에서 지급하는지를 질의하다.

법인담당(김진희) 퇴직수당의 40%를 법인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인의 부담 여력이 어렵기 때문에 매년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부족분에 대해 학교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명예퇴직금 산정방식도 간략하게 설명하다.

이 사(강병환) 산정식이 어떻게 정해진 것인지를 질의하다.

법인담당(김진희) 대학 교직원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 규정에 나와 있다고 답변하다.

의 장(오초녀)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의견개진하여 줄 것을 요구하다.

이 사(강병환) 2022학년도 상반기 명예퇴직 제청 심의 건에 대해 원안에 동의하다.

이 사(임종채) 재청하다.

이 사(배동호) 삼청하다.

의 장(오초녀) 동의와 재청에 따라 의안 제1호 청암대학교 2022학년도 상반기 명예퇴직 제청 심의 건은 XXXXXXXXXXXXXXXXXXXXXXXXXX과 XXXXXXXXXXXXXXXXXXXX 이상 2명을 2022년 8월 31일자로 명예퇴직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2) 청암대학교 2022년 9월 1일자 전임교원 재임용 제청 심의

의 장(오초녀) 의안 제2호 청암대학교 2022년 9월 1일자 전임교원 재임용 제청 심의 건을 상정하고 교무팀장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다.

교무팀장(김용철) 재임용 대상자는 총 3명으로 2022. 6. 7. 재임용 대상자에 대한 평정을 실시했으며, 2022. 6. 13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에서 3명 모두 연구실적물 100%를 충족하고 평정점수가 60점 이상으로 나와 재임용 제청에 동의하였으며, 특이사항으로 XXXX 교수가 연구실적물을 게재예정증명서로 제출하여 재임용 및 승진임용 평정기준 세부지침에 근거하여, 2022.6.30.까지 발간하여 완성물을 제출한다는 전제조건로 제청안에 동의하였음을 설명하다.

<2022년 9월 1일자 전임교원 재임용 제청 대상자>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차기임용기간	비고
1	XXXXXXXXXXXXXXXXXXXXXXXXXX			2022.9.1.~2025.8.31	정년
2	XXXXXXXXXXXXXXXXXXXXXXXXXX			2022.9.1.~2025.8.31	
3	XXXXXXXXXXXXXXXXXXXXXXXXXX			2022.9.1.~2023.8.31	산증

이 사(강병환) XXXX 교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재설명을 요구하다.

교무팀장(김용철) 재임용을 위해서는 연구실적물이 100%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다고 설명하고, 게재예정증명서는 재임용 및 승진임용 평

이사장 오초녀		이 사 강병환		이 사 배동호	

정기준 세부지침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책을 한 권 완간한다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제청을 하였고,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우선 표지와 목차를 제출하였다고 보고하다.

이 사(강병환) 만약 충족이 되지 않으면 재임용에 탈락되는지를 질의하다.

교무팀장(김용철) 그렇다고 답변하고, 연구실적 100%는 재임용의 기본 전제조건이라고 설명하다.

의 장(오초녀) 재임용 대상자 중 한 명에 대해 모 교수가 법인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 먼저 심의하고 싶다고 의사진행 발언하고, 김도영 이사가 이사장이던 2020년 12월 8일, 12월 16일, 12월 30일 그때 재임용 건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시간을 심의하였는데 또다시 그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다고 발언하다.

(강사범 이사 중도입실하다.)

이 사(김도영) 제가 이사장이었을 때 전부 다 모든 이사들이 전부 통과시켰잖아요. 라고 발언하다.

의 장(오초녀) 당시 우리가 몇 시간을 끌어서, 결론은 이사회에서 인사위원회에서 동의돼서 왔으니까 통과를 해주자고 했을 때, 김도영 이사님이 그걸 엄청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발언하다.

이 사(김도영)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부 통과됐잖아요. 라고 발언하다.

의 장(오초녀) 그때 2번에 걸쳐서 아마 통과가 됐던 것 같다고 발언하다.

이 사(김도영) 결론적으로는 통과됐잖아요. 라고 발언하다.

의 장(오초녀) 결론은 그렇습니다만. 이라고 발언하다.

이 사(김도영) 결론이 통과됐으면 그걸 전부 인정하면 안 됩니까? 라고 발언하다.

의 장(오초녀) 그러니까 일단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왔으니까 통과는 해야 하는데, 또 연구실적물(책자)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점수에 들어가는 책자가. 라고 발언하다.

이 사(김도영)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의례적인 것이고,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것은 100% 제출될 것으로 알고 우리 이사회에 올린 것이 맞지요? 라고 교무팀장에게 질의하다.

교무팀장(김용철) 맞다고 답변하다.

이 사(김도영) 이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책자가 발간이 된다고 인정하고 올린 것이라고 발언하고, 나중에 발간이 안 됐을 때는 다시 (재임용을) 취소하면 됩니다. 라고 발언하다.

이사장 오초녀		이 사 강병환	강병환	이 사 배동호	배동호

이사장 오초녀	오초녀	이 사 강병환	강병환	이 사 배동호	배동호

이사장 오초녀		이 사 강병환		이 사 배동호	

이사장 오초녀		이 사 강병환		이 사 배동호	

이 사(강병환) 잠깐 정회를 하면서 논의를 한 다음에 진행하는 게 어떻겠는지를 의견 개진하다.

의 장(오초녀) 10분간 정회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므로 이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10분간 정회하겠다고 의사진행 발언하다.

(15분간 정회 후 속개하다.)

이사장 오초녀		이 사 강병환		이 사 배동호	

감　사(공태곤)　재임용을 진행하는데 회의 방향이 그러한 조건, 만약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연구윤리위원회 결과 보고, 그다음에 아까 연구실적물을 게재예정증명서로 대체한 거, 그 조건에 따라서 다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진행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교무팀장(김용철)　아까 게재예정증명서를 보고드렸는데 6월 30일까지 책이 나오지 않으면 자동 재임용탈락입니다. 라고 설명하다.

의　장(오초녀)　현재 재임용 대상자가 3명인데 2명은 원안대로, XXXXXXXXXXXXXXXX은 조건부(게재예정증명서로 제출한 실적물이 6월 30일까지 발간이 되지 않으면 재임용 탈락, 연구윤리위반 부정행위 최종 결과 재임용 탈락사유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될 경우 재심의)로 재임용 의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이사들에게 의견 개진을 요구하다.

사회자(류승현)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이사들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XXXXXXXXXXXXXXXXXX , XXXXXXXXXXXXXXXXXXXXXX 2명은 원안대로 재임용을 의결하고, XXXXXXXXXXXXXXXXXXXXXX은 현재 조건부로 인사위원회에서 교재발간 게재예정증명서로 제출한 실적물이 6월 30일까지 발간이 되지 않으면 재임용 탈락이고, 연구윤리위반 부정행위에 대해서 연구윤리협회에 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토 결과가 오면 최종 결과가 왔을 때 해당되는 부정행위가 재임용 탈락사유가 된다거나 징계사유가 되면 그때 절차대로 재심의하겠다는 조건부로 오늘 재임용은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김도영 이사에게 동의하는지를 질의하다.

이　사(김도영)　동의한다고 발언하다.

이　사(임종채)　재청하다.

의　장(오초녀)　동의와 재청에 따라 의안 제2호 청암대학교 2022년 9월 1일자 전임교원 재임용 제청 심의 건은 XXXXXXXXXXXXXXXX 을 2022. 9. 1~2025. 8. 31까지 3년간, XXXXXXXXXXXXXXXXXX을 2022. 9. 1~ 2023. 8 .31까지 1년간,XXXXXXXXXXXXXXXXXXX 을 2022. 9. 1~2025. 8. 31까지 3년간

이사장 오초녀	오초녀	이　사 강병환	강병환	이　사 배동호	배동호

재임용하는 것으로 하되, XXXXXXX 의 연구실적물이 2022년 6월 30일까지 나오지 않을 경우는 재임용이 탈락되며, 연구부정 조사 최종 결과 재임용 탈락사유 또는 징계 사유에 해당이 될 경우는 재심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3) 법인 기본재산 운영 및 관리 방안 심의

의 장(오초녀) 의안 제3호 법인 기본재산 운영 및 관리 방안 심의 건을 상정하고, 법인담당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다.

법인담당(김진희) 지난 2022년 4회 법인이사회 업무보고로 순천시 시내버스 환승센터 조성사업에 우리 법인 토지 7필지 1,893㎡가 편입된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 편입되는 토지 중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4필지 463㎡(지번: 덕월동 275-2, 275-3, 278-5, 278-6번지)가 현재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신고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사유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어 수익을 내기 어렵고, 공시지가도 나오지 않는 토지라서 신고가 누락이 된 것 같으며, 4필지 모두 취득일자가 1976년 8월 2일에 이미 등기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이사회에서 수익용 재산 등록 내용을 심의·의결한 후 교육부 사학진흥재단에 수익용기본재산으로 해당 4필지를 신고하는 절차를 설명하다.

<등록 예정 수익용 토지 목록>

연번	구분	취득일자	고유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취득금액(원)
1	토지	1976.08.02	2013-1996-039985	순천시 덕월동	275-2	도로	89	-
2	토지	1976.08.02	2013-1996-039986	순천시 덕월동	275-3	도로	99	-
3	토지	1976.08.02	2013-1996-039995	순천시 덕월동	278-5	도로	113	-
4	토지	1976.08.02	2013-1996-039996	순천시 덕월동	278-6	도로	162	-

그리고 순천시 시내버스 환승센터 조성사업 7필지 1,893㎡에 대한 감정평가(감정평가가 지난 22일 수요일에 진행되었고, 우리 법인이 추천한 1곳 외에 총 3개 기관에서 실시) 평균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으로 처분하고자 합니다. 처분 후에는 우선은 예금으로 예치한 후 적절한 수익용 건물이 있을 경우 취득도 고려하고 있지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분간은 수익용예금으로 우선 예치하면서 수익 창출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이사회에서의 토지 처분 및 처분대금 사용용도에 대해 의결해 주시면 의결 결과에 따라 순천시와 계약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교육부에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할 예정이라고 관련 절차를 설명하다.

이사장 오초녀	오초녀	이 사 강병환	강병환	이 사 배동호	배동호

<순천시 시내버스 환승센터 조성사업 편입 필지 목록>

연번	구분	취득일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취득금액(원)	편입면적(㎡)
1	토지	1976.08.02	순천시 덕월동	275-1	답	1,176	145,824,000	1,176
2	토지	1976.08.02	순천시 덕월동	278-4	답	282	31,302,000	282
3	토지	2008.11.04	순천시 덕월동	1324-32	전	27	7,830,000	27
4	토지	1976.08.02	순천시 덕월동	275-2	도로	89	0	89
5	토지	1976.08.02	순천시 덕월동	275-3	도로	99	0	99
6	토지	1976.08.02	순천시 덕월동	278-5	도로	113	0	113
7	토지	1976.08.02	순천시 덕월동	278-6	도로	162	0	107
합계	7필지					1,948	184,956,000	1,893

의 장(오초녀) 법인 기본재산 관련하여 2가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는데,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어 수익용 재산으로 신고 누락되어 있는 4필지에 대해 사학진흥재단에 신고하는 내용과 법인의 수익용 토지 중 순천시 시내버스 환승센터 조성사업으로 7필지가 편입되므로 감정평가 금액으로 처분하고자 하며, 당분간은 처분대금을 예금으로 관리한다는 설명이었던 것 같다고 설명하고, 먼저 신고 누락되어 있는 4필지를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신고하는 것에 대한 의견개진을 요구하다.

이 사(강병환)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어서 관리가 소홀했던 것 같다고 발언하고, 수익용 재산으로 꼭 등록해야 하는지를 질의하다.

법인담당(김진희) 교육부에 재산으로 등록해 놓아야 추후 처분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재산등록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해 주시면 바로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하다.

의 장(오초녀) 누락된 토지 4필지에를 기본재산으로 등록하는 것에 대한 의견개진을 요구하다.

이 사(강병환) 동의하다.

이 사(배동호) 재청하다.

의 장(오초녀) 두 번째로 누락된 토지 4필지를 포함하여 순천시 시내버스 환승센터 조성사업에 법인의 수익용 토지 7필지를 감정평가 금액으로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을 예금으로 우선 관리하는 것에 대한 의견개진을 요구하다.

법인담당(김진희) 환승센터 조성에 들어가는 법인 토지 7필지 처분 및 처분금액 활용에 대해 이사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시와 계약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다.

이사장 오초녀	오초녀	이 사 강병환	강병환	이 사 배동호	배동호

사회자(류승현) 그동안은 업무보고로 경과 등을 설명 올린 것이였고 오늘은 처분(매각)에 대해 승인을 받고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라고 설명하다.

이 사(배동호)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각처분하고 처분대금을 우선 예금으로 예치하는 것에 동의하다.

이 사(강병환) 재청하다.

의 장(오초녀) 동의와 재청에 따라 의안 제3호 법인 기본재산 운영 및 관리 방안 심의 건은 법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어 교육부 사학진흥재단에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신고 누락된 토지 덕월동 275-2, 275-3, 278-5, 278-6번지(4필지, 463㎡)를 사학진흥재단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신고하고, 순천시 시내버스 환승센터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덕월동 275-1 외 6필지, 총 1,893㎡를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처분하고 그 처분금액은 수익용 예금으로 우선 관리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4) 법인 임원(이사) 해임 심의

의 장(오초녀) 의안 제4호 법인 임원(이사) 해임 심의 건을 상정하고, 법인담당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다.

법인담당(김진희) 회의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법인 이사이신 유병용 이사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2022년 6월 13일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정관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제2항 제7호 「사임서를 제출하였을 때」에 의거,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하고자 안건을 상정 배경을 설명하다.

사회자(류승현) 건강상의 이유인 것 같다고 추가설명하다.

법인담당(김진희) 의원면직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정관에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는 절차가 나와 있다고 설명하다.

의 장(오초녀) 유병용 이사의 해임에 대한 의견개진을 요구하다.

이 사(전 원) 법인 임원에서 해임하는 것에 동의하다.

의 장(오초녀)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에 따라 의안 제4호 법인 임원(이사) 해임 심의 건은 유병용 이사를 2022년 6월 24일자로 법인 이사에서 해임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5) 법인 임원(이사) 선임 심의

의 장(오초녀) 의안 제5호 법인 임원(이사) 선임 심의 건을 상정하고, 법인담당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다.

법인담당(김진희) 의안 제4호 법인 임원(이사) 해임 심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정관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제3항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

이사장 오초녀		이 사 강병환		이 사 배동호	

충하여야 하며, 정관 제19조(임원의 임기) 제2항에 의거,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므로, 유병용 이사의 임기가 2024.11.3.까지였으므로 금번 선임될 이사의 임기는 교육부승인일로부터 2024.11.3.까지이며, 사립학교법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제3항에 의거,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이어야 해서, 현재 순천청암고등학교 오승철 교장을 법인 임원(이사)로 선임하고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다.

의 장(오초녀) 법인 이사 후보자인 오승철 교장에 대한 의견개진을 요구하다.

이 사(전 원) 순천청암고등학교 오승철 교장의 이사 선임에 전원 동의하다.

의 장(오초녀)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에 따라 의안 제5호 법인 임원(이사) 선임 심의 건은 현 순천청암고등학교 오승철 교장을 교육부 승인일로부터 2024년 11월 3일까지 법인 임원(이사)로 선임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오승철 교장 입실하여 법인 임원(이사)으로 선임된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고 퇴실하다.)

바. 기타토의 및 업무보고

1) 청암대학교 2022년 8월 31일자 정년퇴직 보고

법인담당(김진희) 회의자료와 같이 교무처로부터 2022년 8월 31일자 정년퇴직자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정년퇴직은 면직에 해당되나 반드시 이사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어 업무보고로 대신한다고 설명하다.

<정년퇴직 대상자 명단>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재직기간	비고
1	XXXXXXXXXXXXXXXXXX			1983.6.1.~2022.8.31	부총장 겸 총장직무대행
2	XXXXXXXXXXXXXXXXXXXX			1999.3.1.~2022.8.31	

2) 청암대학교 명예교원 임용 보고

법인담당(김진희) 명예교원 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명예교원 임용 시행 규칙에 의거 임용된 2022년 7월 1일자 명예교원에 대해 보고하다.

<명예교원 대상자 명단>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재직기간	비고
1	XXXXXXXXXXXXXXXXXXXX			2022.7.1.~2024.6.30	연임
2	XXXXXXXXXXXXXXXXXXXX			2022.7.1.~2024.6.30	연임
3	XXXXXXXXXXXXXXXXXXXX			2022.7.1.~2024.6.30	연임

3) 청암대학교 2022학년도 2학기 계약제 전임교원 신규채용 계획 보고

법인담당(김진희) 기존에는 전임교원 신규채용 절차가 대학에서 법인이사장에게 신규채용

이사장 오초녀		이 사 강병환	강병환	이 사 배동호	

계획에 대해 승인 요청하면 이사장님의 결재를 득한 후 대학에서 채용공고가 나갔는데 우리 법인은 임용권이 법인에 있으므로 이사회에 먼저 신규채용 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이사장님 결재를 득하여 승인 통보하는 것으로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정년퇴직 등으로 2022학년도 하반기 전임교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교무처에서 계획서를 올렸으며, 채용예정인원은 간호학과 교원 2명, 보건의료행정과 교원 1명으로 이사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바로 모집 공고하도록 이사장님 결재를 득한 후 대학에 회신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의 장(오초녀) 하반기 계약제 전임교원 신규채용 계획에 대한 의견개진을 요구하다.

이 사(전 원) 신규채용 계획을 승인하는 것에 전원 동의하다.

4) 청암대학교 치위생과 교원 진정서 관련 보고

이사장 오초녀	오초녀	이 사 강병환	강병환	이 사 배동호	배동호

5) 청암대학교 교육부 종합감사 지적사항 이행 관련 경과 보고

법인담당(김진희) 지난 이사회에서 교육부 종합감사 미이행사항 중 기본재산 관련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학교용지 내에 있는 수익용 토지와 유휴 교육용 재산을 교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감정평가를 받겠다고 보고하였고, 감정평가기관 2곳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금액을 오늘 이사회에서 보고하고, 재산 교환시 차액(46,690,155원)이 발생하여 차액에 대한 보전 방안을 검토한 뒤 차기 이사회에서 수익용 토지 16필지와 유휴 교육용 재산(토지 및 건물)을 교환하는 내용으로 안건에 상정하여 심의받고자 계획 중임을 이행방안 관련 경과 보고 자료를 보면서 상세하게 설명하다.

<감정평가 평균금액>

① 수익용 기본재산		②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학교시설 결정지역 내 토지 16필지, 10,860㎡	⇔	고추장공장 실습장+염포연수원+ 관사 아파트 1곳+학생 기숙사 3곳
2,545,014,000원		2,591,704,155원

(김도영 이사 중도 퇴실하다.)

이 사(강병환) 유휴 교육용 재산 중 일부는 위치나 가치 등으로 봤을 때 법인 수익용으로 가지고 오더라도 수익 창출에 어려움이 있는데 반드시 차액에 대해서 보존해 주어야 하는지를 질의하다.

법인담당(김진희)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지침에 교환 시 차액에 대해서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하고, 예를 들어 고추장공장 부지의 경우는 주차장 용지로 활용하여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 같고, 염포연수원은 직영 운영이 아니라 고흥군청에 매각하거나 개인에게 저렴한 금액에 임대해주는 방법 등의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하고, 특히 염포연수원의 경우는 교육용으로는 운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교환 대상에 넣었다고 설명하다.

의 장(오초녀) 그래도 재산을 교환하는 것으로 감사 지적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발언하다.

사회자(류승현) 이것이 해결되면 감사 지적사항은 소송에서 승소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것만 남게 된다고 설명하고, 소송 상대 중 XXXXX씨의 경우, 소송비용도 법인에 지급하지 않고, 우리 법인을 상대로 그동안 수 차례 소송을 걸었는데 이번에 무고로 검찰에 넘어가서 돼서 앞으로는 법인에 소송을 제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보고하다.

이사장 오초녀		이 사 강병환	강병환	이 사 배동호	

이 사(강병환) XXXX.씨가 연세도 많으신데 그동안 정말 오랜 동안 법인에 소송도 걸어오고 힘들게 했다고 발언하다.

의 장(오초녀) 비용 회수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소송만 제기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고 발언하다.

6) 차기 이사회 일정 토의

법인담당(김진희) 2022학년도 하반기 신규교원 채용 및 총장직무대행을 하고 계신 오미성 부총장이 2022년 8월말로 정년퇴직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하여 8월말 전에 차기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 같다고 설명하다.

의 장(오초녀) 차기 이사회 일정에 대한 의견개진을 요구하다.

이 사(전 원) 2022년 8월 19일 금요일 오후 4시에 하는 것에 전원 동의하다.

의 장(오초녀) 참석 이사 전원에 따라 차기 이사회 일정은 2022년 8월 19일 오후 4시에 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사. 비공개 안건 심의

의 장(오초녀)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비공개 대상)에 의거하여 오늘 이사회 내용 중 비공개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 개진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없으면 사무 절차상의 이름 등만 부분 비공개하자고 의사진행 발언하다.

이 사(전 원) 오늘 안건 제2호 의안 중 연구윤리 관련 내용과 기타토의 및 업무보고 제4호 치위생과 교원 진정서 관련 내용은 전체 비공개하며, 사무절차상 이름 등 인사 관련 사항은 부분 비공개하는 것에 전원 동의하다.

의 장(오초녀) 참석 이사 전원에 따라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비공개 대상)에 의거, 안건 제2호 의안 중 연구윤리 관련 내용과 기타토의 및 업무보고 제4호 치위생과 교원 진정서 관련 내용은 전체 비공개하며, 사무절차상 이름 등 인사 관련 사항은 부분 비공개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아. 간서명 대표자 호선

의 장(오초녀) 사립학교법 제18조2에 의거 본 회의의 회의록 간서명함에 있어 3인을 호선할 것을 요청하다.

이 사(전 원) 오초녀, 강병환, 배동호 이사님이 간서명하는 것에 전원 동의하다.

의 장(오초녀) 전원 동의에 따라 오초녀, 강병환, 배동호 이상 3명이 간서명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이사장 오초녀	오초녀	이 사 강병환	강병환	이 사 배동호	배동호

6. 폐회선언

의 장(오초녀) 이사회 폐회에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2022년 5회 법인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다.

(폐회 : 2022년 06월 24일 16시 35분)

2022. 06. 24.

학 교 법 인 청 암 학 원

이 사 장	오 초 녀	
이 사	강 병 환	
이 사	강 사 범	서명
이 사	김 도 영	
이 사	배 동 호	
이 사	유 병 용	불참
이 사	임 종 채	
감 사	공 태 곤	
감 사	양 정 훈	불참

이사장 오초녀		이 사 강병환		이 사 배동호	